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징벌적 배상 책임 도입〉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53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징벌적 배상 책임 도입 ·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8일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8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 재해 및 산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사업주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노동자와 노무제공자 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과 억지에 한계가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주요 조항 위반 시에는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징벌적 배상 책임 도입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가 제58·69·95조·117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의3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6조의3(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주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제58조, 제69조, 제95조 및 제117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u>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u> <u>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u> <u>3.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u> <u>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u> <u>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u> <u>6. 사업주의 재산상태</u> <u>7.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u>
--	--

나. 검토의견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은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 1)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업주의 해당 의무 위반을 억제하고, 해당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의무 위반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개정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에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제38·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문 의 처
02)6788-5545